

국내 은행의 위험관리 실태

김 석 진*

〈요 약〉

본 연구는 총 26개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은행의 위험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정상은행과 경고은행 및 퇴출은행의 위험관리 행태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최고경영자나 임원이 위험관리 부서의 책임자로 있는 경우는 없고, 금융파생상품의 사용 등 관련사항의 보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감사위원회 역시 외부전문가를 둔 은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영층의 위험관리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관리에 관한 평가나 최고경영자에 대한 보고주기도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위험 유형별로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및 유동성위험을 잘 인식하고 있는 반면, 운영위험이나 법적위험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다. 위험관리 담당자의 교육 주기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0%로 가장 높았으며, 40%의 은행이 법적위험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시장위험 관리에 있어서도 매일 VaR값과 실제 손익을 정기적으로 비교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5%에 불과하여 취약성을 드러냈다. 절반 정도의 은행은 금융파생상품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정상은행과 비정상은행 간 또는 비퇴출은행과 퇴출은행 간에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행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국내 은행의 위험관리는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체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위험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인식 제고가 요망되며, 합리적 은행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당해 은행의 위험관리 실태와 그에 따른 경영책임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I. 서 론

최근 국내 금융산업은 금융자율화, 금융정보화 및 금융상품의 다양화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의 역할도 기존의 단순 증개기능에서 투자자의

*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본 논문은 한화경제연구원이 1999년 발간한 필자의 단행본 「국내 은행의 위험노출과 위험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의 제IV장을 수정·보완한 것임. 익명의 두 심사위원의 세심한 지적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과정에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설병문군, 변현수군과 김지영양의 도움이 컸음을 밝히둔다. 그러나 남아있는 오류는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입니다.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야 하는 적극적 기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은행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으며, 금융위험관리 수단으로써 파생상품의 이용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위험관리는 미래 순현금흐름을 증가시키고, 재무위험을 감소시키며, 합리적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가치를 상승시키고, 주주 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Stulz(1984)는 경영자의 적극적 위험관리가 기업가치 변동성을 줄이고 가치를 상승시킨다고 보았다. Smith and Stulz(1985)는 세율이 이익에 대한 불록함수의 형태를 띠는 경우, 위험관리를 통해 미래 순현금흐름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불록성의 효과로 인해 미래 기대이익이 안정적일 경우에 비해 변동성이 클 경우의 평균세율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위험관리를 통해 기업가치를 안정시킴으로써 재무적 곤경 비용을 줄이고 부채 조달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¹⁾ Froot, Scharfstein, and Stein(1989)에 따르면 기업가치 변동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더욱 높은 투자수익률을 요구하게 되므로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과소투자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경우 위험관리를 통해 변동성을 줄임으로써 효율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나아가, Breeden and Viswanathan(1996)은 위험관리를 통해 경영자의 효익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금리나 통화 등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외적 위험에 의해 경영자의 성과가 좌우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적극적 위험관리를 통해 경영자는 능력을 인정받고 그들의 지위를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²⁾

한편, 위험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GAO(1994)는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외파생상품 딜러에 대한 규제, 위험관리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등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³⁾ Bodnar, Hayt, and Marston(1996)은 미국 기업(금융업 제외)의 41%가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Levich, Hayt, and Ripston(1999)은 연금기금, 대학기금, 사적 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46%가 파생상품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 관리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Loderer and Pichler(2000)은 스위스 기업을 대상으로 위험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가치와 위험에 대한 적

- 1) Diamond(1984)도 금융기관의 적극적 헤지활동은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과 관련한 유인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 2) Santomero(1995)는 은행의 위험관리를 위해 첫째, 표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둘째, 금융파생상품 이용의 한도를 설정하고 규칙을 정하는 것, 셋째, 투자에 대한 지침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 넷째, 위험관리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3) GAO의 조사대상은 은행(30개), 증권회사(20개), 산업협회(19개), 연금기금(6개), 보험회사(5개), 저축기관(5개), 소프트웨어 판매회사(3개)와 신용평가기관(2개)이다.

절한 평가와 파생상품을 통한 적극적 헤지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설문 조사를 통해 국내 은행의 위험관리 체계를 살펴보고 금융파생상품의 사용목적과 현황을 분석하여 전반적인 위험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설문지는 1997년 말 기준 26개 상장 은행에 발송되었으며 그 중 응답한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최고경영자나 임원이 위험관리 부서의 책임자로 있는 경우는 없고, 금융파생상품의 사용 등 관련사항의 보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감사위원회 역시 외부전문가를 둔 은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영층의 위험관리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관리에 관한 평가나 최고경영자에 대한 보고주기도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험의 평가방법으로는 12개의 은행이 스트레스 점검·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한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10개 은행이 듀레이션, 9개의 은행이 VaR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위험 유형별로는 전통적 은행업무와 관련한 신용위험이나 시장위험 및 유동성위험을 잘 인식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운영위험이나 법적위험에 대한 인식은 미비하였다. 시장위험 관리에 있어서도 시장위험 측정모형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은행은 40%로 나타났으나, 매일 VaR값과 실제 손익을 정기적으로 비교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5%에 불과하여 취약성을 드러내었다. 위험관리 담당자의 교육 주기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0%로 가장 높았으며, 40%의 은행이 법적위험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반 정도의 은행이 금융파생상품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어, 금융파생상품을 이용한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하는 은행의 경우 주로 스왑과 선물을 이용하고, 주식과 옵션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정상은행과 비정상은행(경고은행 및 퇴출은행), 비퇴출은행(정상은행 및 경고은행)과 퇴출은행 간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집단별 위험관리 행태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고은행과 퇴출은행을 선정할 때 위험관리에 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국내 은행의 위험관리는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특히 법적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국제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적절한 대비책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위험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체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하겠다. 아울러 합리적 은행구조조정을 위해서는 BIS 기준의 확일적 적용보다는 당해 은행의 위험관리 실태와 그에 따른 경영책임을 파

악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선행연구를 소개하는 머리말에 이어 제Ⅱ절에서는 자료와 조사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제Ⅲ절에서는 국내 은행의 위험관리 현황에 관한 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끝으로, 제Ⅳ절 맺음말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과 한계점을 기술한다.

Ⅱ. 자료와 조사방법

본 조사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설문을 통한 연구 방법은 기존의 계량자료를 이용한 연구와는 달리 은행경영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설문지는 1997년 말 기준 26개 상장 은행(16개의 시중은행과 10개의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1998년 4월에 1차로 기획부장 앞으로 발송되었으며 동년 5월에 은행장 앞으로 협조문을 발송하였다. 답변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동년 8월 협조문과 함께 설문지를 재발송하였다. 6개 은행의 설문지는 결국 회수되지 않아 총 20개의 은행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은행 구조조정과정에서 퇴출과 조건부 승인 판정을 받은 은행(이하에서는 경고은행이라 한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판정을 받은 은행에 비해 위험관리 행태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국내 은행을 정상은행, 경고은행 및 퇴출은행으로 분류하였다. 조사대상이 되는 은행은 <표 1>과 같다. 분석 대상은 12개의 정상은행, 4개의 경고은행과 4개의 퇴출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조사대상 은행

구 분	응답 은행	무응답 은행
정상은행(14)	경남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보람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장기신용은행, 전북은행, 제일은행, 제주은행, 주택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서울은행
경고은행(7)	강원은행, 상업은행, 외환은행, 충북은행	조흥은행, 평화은행, 한일은행
퇴출은행(5)	경기은행, 대동은행, 동남은행, 충청은행	동화은행

설문은 금융위험관리 전반에 관한 질문과 금융파생상품 사용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된다(부록 참조). 본 연구는 은행이 직면하는 위험을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 운

영위험 및 법적위험으로 세분하고 개별위험별 관리 실태를 조사한다.⁴⁾ 설문지 작성은 BIS(1994)의 금융과생상품 위험관리지침과 Bodnar, Hayt, and Marston(1996)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설문문항에 대하여 은행별 빈도분석뿐만 아니라 정상은행과 비정상은행(경고은행과 퇴출은행), 비퇴출은행(정상은행과 경고은행)과 퇴출은행 간의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계량화가 가능한 설문문항, 즉 자료가 등간척도나 서열척도인 문항에 대해서는 가장 부정적인 응답에 1점을 부여하고 긍정적인 응답으로 갈수록 단계적으로 1점씩 더한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 다음 집단간 차이검정을 위해 표본크기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맨-휘트니 U 검정(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정규분포 가정 하에서 두 집단의 평균차이를 검정하는 t검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계량화가 불가능한 범주형 설문문항에 대해서는 '해당 없다'는 응답에 0점, 나머지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에 O표를 한 숫자만큼 점수를 부여한 다음, 표본 수가 적은 경우에 적용되는 피셔 정확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실시하여 집단간 차이검정을 하였다 [Daniel(1978) 참조].

Ⅲ. 국내 은행의 위험관리 실태 조사 결과

1. 국내 은행의 위험관리 조직

본 설문지의 응답자는 각 은행에서 금융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다. <표 2>는 이들 실무자들이 밝히는 국내 은행 조직의 현황이다. 위험관리조직 책임자는 부장에서 대리까지의 다양한 계층의 중간관리자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경영자를 비롯하여 은행의 임원진이 위험관리에 직접적인 참여는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험관리조직의 인원은 10명 이상인 곳이 5곳이며, 나머지 은행은 6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험관리업무는 전문성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7개 은행의 위험관

4) Santomero(1995)는 은행이 직면하는 위험을 시장위험 혹은 체계적위험, 신용위험, 거래상대방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법적위험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효과적인 은행감독을 위한 핵심원칙"에서 은행의 위험으로 여신부실위험, 국가위험(환율변동위험 포함), 시장가격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유동성위험, 내부관리위험, 법률위험 및 평판위험을 들고 있다. Coopers & Lybrand 사의 GARP(generally accepted risk principles)는 위험을 신용위험, 시장위험, 포트폴리오집중(portfolio concentration)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영업/사건(business/event)위험으로 구분하고 각 위험을 세분하고 있다.

리조직 최고책임자의 현 업무 담당기간이 3년 미만이었다.

<표 2> 국내 은행의 위험관리 조직

구 분	책임자 직급	인 원	책임자 현 업무 담당기간
1	부장	14	1년
2	부장	10	2년4개월
3	부장	6	3년
4	부장	3	5년
5	실장	15	6개월
6	실장	5	2개월
7	실장	5	-
8	실장	5	-
9	팀장	10	6년4개월
10	팀장	6	8년
11	차장	5	8개월
12	차장	5	4년
13	차장	5	3년
14	차장	4	3년4개월
15	차장	4	3년
16	과장	11	1년6개월
17	과장	3	3년
18	대리	3	5년4개월
19	대리	3	5년2개월
20	대리	3	1년1개월
평 균	-	6.25	3년1개월

주) 1-20번까지의 순서는 은행의 이름과 무관함.

2. 위험관리체계 현황

<표 3>은 금융위험 관리에 대한 내부규정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와 관리체계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위험관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부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경고은행 중 한 개의 은행만이 내부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⁵⁾ 그러나 관리체계의 효과에 대해서는 9개 은행이 부정적으로

5) Wharton/CIBC World Markets(1998)에서는 조사기업(금융업 제외)의 79%가 파생상품 이용에 관해 명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Levich, Hayt, and Ripston(1999)에서는 기관투자자의 39%만이 명문화된 위험관리 규정이 있었으며, 파생상품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는 그 비율이 68%이었다.

평가하고 있어 효과적인 은행 관리체계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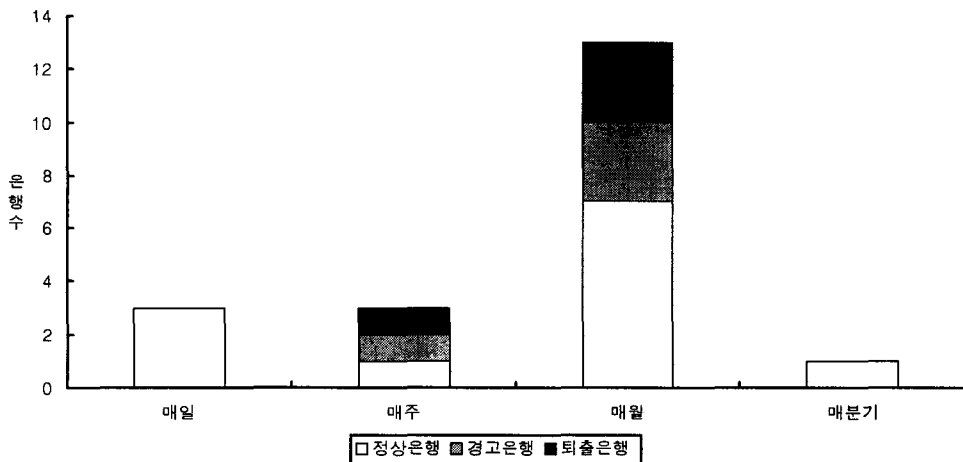
<표 3> 위험관리 내부규정과 관리체계 효과

구분		계	정상은행	경고은행	퇴출은행
내부규정 유무	있음	19(95%)	12	3	4
	없음	1(5%)	0	1	0
관리체계 효과	매우 높다	0	0	0	0
	높다	11(55%)	7	1	3
	낮다	9(45%)	5	3	1
	매우 낮다	0	0	0	0

주) () 안은 구성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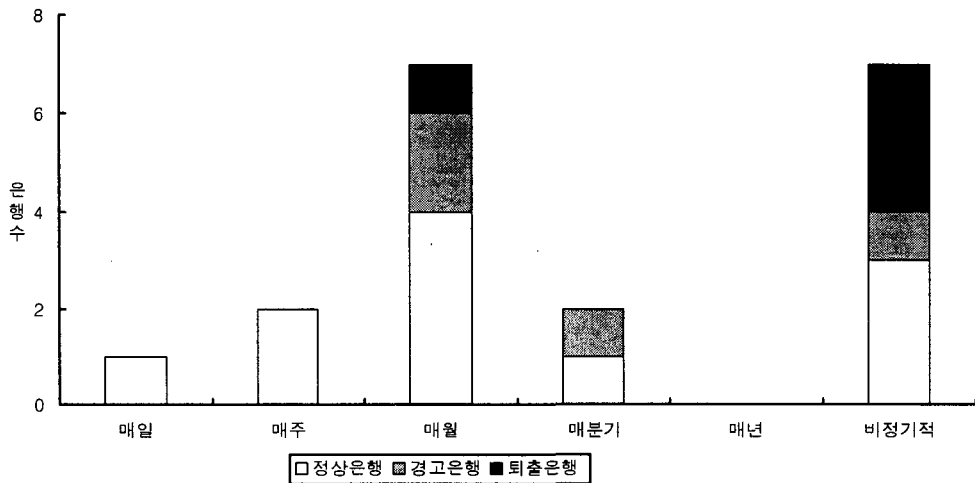
[그림 1]에서 보듯이 최고경영자에게 금융위험의 노출상태와 관리현황을 보고하는 주기는 매일 보고한다는 은행이 13개 은행으로 가장 많았고, 매일이 3개, 매주가 3개, 매분기가 1개 은행으로 조사되었다. 매일 보고한다는 3개 은행은 모두 정상은행들이었다.

금융위험관리의 방침과 절차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평가 주기는 매일(6개), 매분기(1개), 매반기(1개), 매년(3개), 비정기적으로 특별한 경우(7개), 평가한 적이 없다(2개)로 조사되었다. 최고경영자의 위험관리에 대한 관심 정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본 문항에서 비정기적으로 특별한 경우 평가한다고 응답한 은행이 7개로 가장 많으며 재평가한 적이 없는 은행도 2개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림 1] 위험노출과 관리현황 보고주기

최고경영자에 대한 금융과생상품 사용 보고주기는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매월 보고(7개)와 비정기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보고(7개)가 가장 높았으며, 매주(2개), 매분기(2개), 매일(1개), 매년(없음) 순이었다. 국내 은행의 경우, 매월과 매분기에 보고한다는 은행이 이 문항에 응답한 19개 은행 중 9개로 전체 응답 은행의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⁶⁾ 설문지에 답변한 퇴출은행 4개 중 1개 은행이 매일, 2개 은행이 비정기적으로 보고, 1개 은행은 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비퇴출은행에 비해 보고가 소홀하였다.



주) 정상은행 1개가 응답하지 않았음.

[그림 2] 금융과생상품 사용 보고주기

<표 4>는 금융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가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12개 은행이 스트레스 검정 및 시나리오 분석, 10개 은행이 듀레이션, 9개 은행이 VaR(Value at Risk), 6개 은행이 ALM에 의한 갭, 2개 은행이 옵션 민감도 측정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의 48%, 35%, 20%, 16%가 각각 스트레스 검정과 시나리오 분석, VaR, 듀레이션, 옵션 민감도 측정을 사용한다고 밝힌 Bodnar, Hayt, and Marston(1996)의 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Levich, Hayt, and Ripston(1999)은

6) Bodnar, Hayt, and Marston(1996)에 따르면 이사회에 대한 금융과생상품운영 보고주기는 필요한 경우에 보고하거나 보고주기를 두고 있지 않음(51%), 매월(4%), 매분기(25%), 매년(20%)으로 나타났다. Levich, Hayt, and Ripston(1999)에서는 필요한 경우 보고(45%), 분기별(27%), 월별(18%), 연도별(10%)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고체계에 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14%만이 만족한다고 답해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8%의 기관투자자만이 VaR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서방선진 10개국 은행과 증권회사의 VaR 사용률이 81%에 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BIS(1998)].

<표 4> 사용하는 위험평가방법

구분	계	정상은행	경고은행	퇴출은행
Value at Risk(VaR)	9(45%)	7	2	0
스트레스 검정 혹은 시나리오 분석	12(60%)	8	1	3
옵션 민감도 측정(델타, 감마, 베가 등)	2(10%)	2	0	0
듀레이션	10(50%)	6	1	3
ALM을 이용한 갭분석	6(30%)	2	2	2

주) () 안은 응답한 20개 은행 기준 비율임.

<표 5>에서 보듯이 위험관리활동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10개 은행이 금융위험관리 목적의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등의 행위 감사위원이 참가하고 있는 은행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위원회가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거나 금융위험 관리업무에 대한 별다른 감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은행이 10개로 전체 응답 은행의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금융위험관리에 대한 국내 은행의 관심 부족으로 보여지는 현상이며 정상은행들도 위험관리의 감독에 취약성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표 5> 위험관리에 대한 감독활동

구분	계	정상은행	경고은행	퇴출은행
금융위험관리 목적의 감사위원회가 존재한다.	10(50%)	7	0	3
감사위원회에는 행위 감사위원이 참여한다.	0	0	0	0
별도의 감사위원회가 없이 관련임원이 점검한다.	3(15%)	1	2	0
별다른 감독활동이 없다.	7(35%)	4	2	1

주) () 안은 구성비임.

3. 위험유형별 관리 실태

본 절에서는 국내 은행들이 개별 위험의 심각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관리하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6>에서 보듯이 국내 은행들은 전통적 은행업무와 관련된

신용위험, 시장위험과 유동성위험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운영위험과 법적위험에 대한 인식과 관리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적위험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국내 금융 영업에 익숙해져 있는 은행들이 금융시장 개방 이후 발생할 관리와 운영의 법적 책임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6> 위험유형별 인식 실태

구 분		계	정상은행	경고은행	퇴출은행
신용위험	매우 그렇다	9(45%)	5	2	2
	그렇다	10(50%)	6	2	2
	그렇지 않다	1(5%)	1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0	0
시장위험	매우 그렇다	7(35%)	5	1	1
	그렇다	12(60%)	6	3	3
	그렇지 않다	1(5%)	1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0	0
유동성위험	매우 그렇다	7(35%)	4	2	1
	그렇다	11(55%)	7	2	2
	그렇지 않다	2(10%)	1	0	1
	전혀 그렇지 않다	0	0	0	0
운영위험	매우 그렇다	7(35%)	3	3	1
	그렇다	8(40%)	6	1	1
	그렇지 않다	3(15%)	2	0	1
	전혀 그렇지 않다	2(10%)	1	0	1
법적위험	매우 그렇다	1(5%)	1	0	0
	그렇다	13(65%)	8	3	2
	그렇지 않다	4(20%)	2	1	1
	전혀 그렇지 않다	2(10%)	1	0	1

주) () 안은 구성비임.

1) 신용위험 관리 실태

신용위험(credit risk)이란 은행의 보유 유가증권과 대출에서 발생하는 약정현금흐름(promised cash flow)이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결제 불가능해지거나 지연되는 위험을 의미한다.

<표 7>은 신용위험 관리를 위한 은행 시스템을 조사한 것이다. 19개 은행이 신용위험 전담조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용위험 노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는 은행은 4개뿐인 것으로 조사되어 신용위험 전담조직이 존재하더라도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융파생상품관련 신용위험과 전통적 신용위험을 함께 관리하고 있다고 응답한 은행은 8개이다. 금융파생상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을 전통적 신용위험과 같은 맥락에서 관리하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신용위험 관리에 있어서 정상은행들은 나머지 은행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표 7> 신용위험 관리시스템

구 분	계	정상은행	경고은행	퇴출은행
신용위험관리 전담조직이 존재한다.	19(95%)	11	4	4
금융파생상품관련 신용위험과 전통적 대출관련 신용위험을 함께 관리한다	8(40%)	5	2	1
미래의 신용위험 노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한다.	4(20%)	3	1	0

주) () 안은 응답한 20개 은행 기준 비율임.

한편, <표 8>은 신용위험관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를 나타내고 있다. 최고경영자가 매년 신용한도를 승인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을 한 은행은 13개 은행이며, 32%인 6개 은행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응답한 모든 은행이 신용위험관련 지침 및 절차를 두고 있고, 신용제고를 위해 신용장, 보증 등을 설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내 은행들이 개별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비교적 잘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계를 이용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는 7개 은행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국내 은행의 신용위험은 아직 보증과 담보위주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그런데 비정상은행 중에서는 1개의 은행만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비정상은행이 정상은행보다 상계협정을 더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파생상품관련 신용위험 관리에 대한 질문에서는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 응답이 53%인 10개의 은행에서 나왔으며 7개의 정상은행과 2개의 경고은행만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특히 퇴출은행의 경우 모두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8> 신용위험 관리 실태

구	분	계	정상은행	경고은행	퇴출은행
최고경영자가 신용한도 매년 승인함	매우 그렇다	5(26%)	4	1	0
	그렇다	8(42%)	3	2	3
	그렇지 않다	6(32%)	4	1	1
	전혀 그렇지 않다	0	0	0	0
신용위험관련 지침 및 절차 있음	매우 그렇다	5(26%)	4	0	1
	그렇다	14(74%)	7	4	3
	그렇지 않다	0	0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0	0
개별 거래대상의 신용위험 점검	매우 그렇다	5(26%)	3	1	1
	그렇다	13(68%)	8	2	3
	그렇지 않다	1(5%)	0	1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0	0
신용제고 위해 신용장, 보증, 담보 설정	매우 그렇다	4(21%)	3	1	0
	그렇다	15(79%)	8	3	4
	그렇지 않다	0	0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0	0
신용위험 줄이기 위한 상계 이용	매우 그렇다	3(16%)	2	1	0
	그렇다	9(47%)	3	3	3
	그렇지 않다	7(37%)	6	0	1
	전혀 그렇지 않다	0	0	0	0
금융파생상품관련 신용위험관리	매우 그렇다	3(16%)	3	0	0
	그렇다	6(32%)	4	2	0
	그렇지 않다	8(42%)	3	2	3
	전혀 그렇지 않다	2(11%)	1	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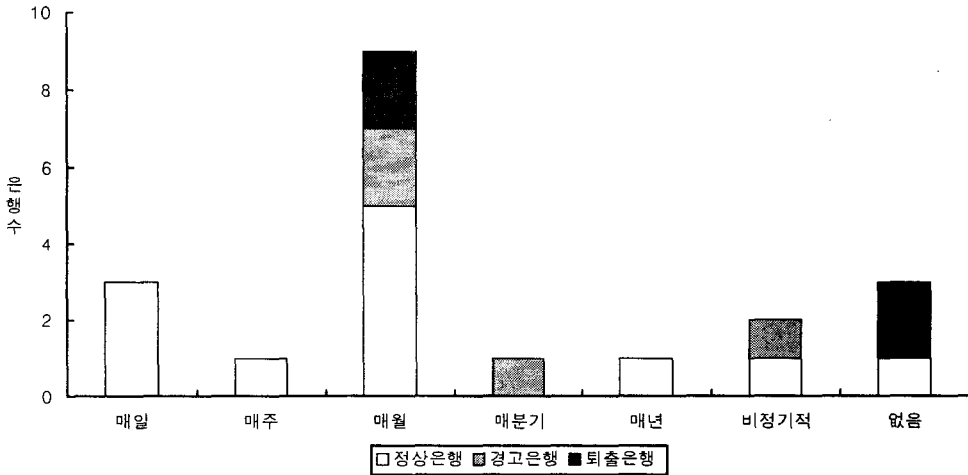
주) () 안은 구성비임. 정상은행 중 1개 은행이 응답하지 않았음.

2) 시장위험 관리 실태

시장위험(market risk)은 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으로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보유 자산 또는 부채의 가치가 변동하는 이자율위험, 시장환율의 변동에 따른 환위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시장위험은 금융상품의 취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중 가장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다.

금융파생상품의 시가 평가 주기에 관한 질문에는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매월 평가한다고 응답한 은행은 9개로 가장 많았으며, 3개의 정상은행이 매일, 1개의 정상은행

이 매주 보유하고 있는 금융파생상품을 시가로 평가한다고 응답하였다. 매분기, 매년 평가한다고 응답한 은행은 각각 1개였으며, 2개의 은행이 비정기적으로 평가하며 또한 평가한 적이 없다고 한 은행도 3개가 있다. 금융파생상품의 시장가치를 매일 평가하는 은행이 3개뿐이라는 점은 국내 은행들이 아직 금융파생상품을 이용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며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보유 주식 포트폴리오를 시가평가하는 주기는 매일 10개 은행, 매월 8개 은행, 매분기 2개 은행으로 조사되어 금융파생상품의 시가평가 주기보다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금융파생상품 시가 평가 주기

시장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포지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며 분석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 전체 은행 차원에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포지션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는 주기는 2개의 정상은행이 매일, 1개의 정상은행이 매주라고 응답했다. 매월 보고한다고 응답한 은행이 9개로 가장 많으며 7개 은행은 비정기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보고한다고 응답하였다.

시장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조사한 내용은 <표 9>에 기록되어 있다. 시장위험 측정모형을 가지고 있는 은행은 8개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매일의 VaR 값과 실제손익을 정기적으로 비교하는 은행은 3개뿐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시장위험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9> 시장위험 관리 실태

구 분		계	정상은행	경고은행	퇴출은행
상품종류, 시장특성, 거래형태 등 감안 손실한도 설정	있음	18(90%)	10	4	4
	없음	2(10%)	2	0	0
시장위험 측정 위한 내부 모형 사용	있음	8(40%)	6	2	0
	없음	12(60%)	6	2	4
매일의 VaR 값과 실제 손익을 정기적으로 비교	있음	3(15%)	3	0	0
	없음	17(85%)	9	4	4

주) () 안은 구성비임.

3) 유동성위험 관리 실태

은행은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에 노출되는데 해당 자산과 부채의 시장성에 따라 위험의 크기가 변하게 된다. 유동성위험 관리를 위하여 유동성 노출을 측정하는 주기는 매일 측정 7개 은행, 매주 2개, 매월 8개, 비정기적 1개로 조사되었다. 퇴출은행 중 1개 은행이 답변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퇴출은행은 모두 매월 유동성위험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에 비하여 유동성에 대한 주기적 관리에 은행들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에서는 유동성의 원천과 사용, 유동성관련 비율의 산정 및 유동성 계획 여부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유동성 관리에 필요한 기본 사항들에 대해서는 5개 은행이 유동성의 원천과 사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2개 은행이 유동성관련 비율을 산정하여 비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2개 은행은 유동성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어 유동성위험 관리에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유동성위험 관리 실태

구 분	계	정상은행	경고은행	퇴출은행
유동성의 원천과 사용을 파악하고 있다.	15(75%)	9	2	4
유동성관련 비율들을 산정하여 비교하고 있다.	18(90%)	11	4	3
유동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18(90%)	10	4	4

주) () 안은 응답한 20개 은행 기준 비율임.

한편, <표 11>은 유동성 계획의 운용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유동성 위기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고 응답한 은행이 13개로 관리의 책임 소재 부재에

다른 방만한 운용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인출의 계절성과 자금인출 가능성이 높은 자금제공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은행이 6개이고, 시간대별 자금인출 예상금액과 그에 따른 자금조달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은행은 13개였다.

필요한 경우 순서대로 처분할 자산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한 은행은 17개이다.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금인출이 은행의 유동성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고 한 개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다른 은행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유동성위험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표 11> 유동성 계획의 운영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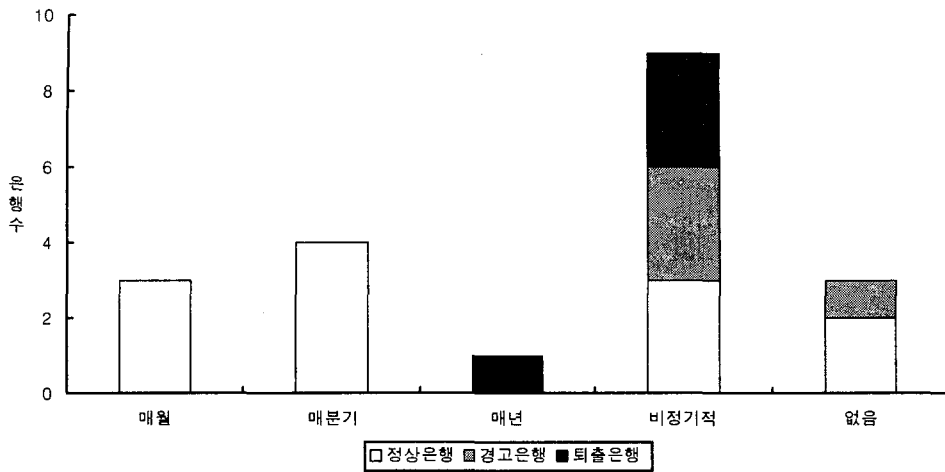
구 분	계	정상은행	경고은행	퇴출은행
유동성 위기와 관련하여 해당 경영자의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되어 있다.	7(35%)	6	0	1
자금인출의 계절성과 자금인출의 가능성이 높은 자금제공자들을 파악하고 있다.	14(70%)	8	3	3
시간대별 자금인출 예상금액과 그에 따른 자금조달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7(35%)	3	0	4
필요할 경우 순서대로 처분할 자산들을 파악하고 있다.	17(85%)	10	4	3

주) () 안은 응답한 20개 은행 기준 비율임.

4) 운영위험 관리 실태

부적절한 시스템, 직원의 사무착오, 관리 실패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운영위험(operational risk)이라 하며,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통신과 컴퓨터의 발달에 보조를 맞추어 정보인프라구축에 많은 투자를 하는 등 운영위험을 낮추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은행의 운영위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은행이 위험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금융파생상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교육 빈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았다. [그림 4]에서 보듯이 20개의 국내 은행 중 3개의 정상은행만이 금융파생상품에 대해 매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4개의 정상은행이 매분기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채은행 중 9개가 비정기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위험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했으며, 3개의 은행은 교육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은행이 12개로 60%에 해당하며 정상은행 중 5개 은행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4] 위험관리 담당자 교육 주기

<표 12> 운영위험 관리 실태

구분		계	정상은행	경고은행	퇴출은행
오류발생시 경영진에게 즉시 보고	매우 그렇다	4(21%)	2	2	0
	그렇다	14(74%)	8	2	4
	그렇지 않다	1(5%)	1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0	0
거래상대방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매우 그렇다	4(21%)	2	0	2
	그렇다	6(32%)	4	1	1
	그렇지 않다	7(37%)	4	3	0
	전혀 그렇지 않다	2(11%)	1	0	1
보안유지장치(자료 접근·비밀번호관리)	매우 그렇다	9(47%)	4	3	2
	그렇다	10(53%)	7	1	2
	그렇지 않다	0	0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0	0
운영시스템 개발·유지 노력	매우 그렇다	6(32%)	3	1	2
	그렇다	11(58%)	6	3	2
	그렇지 않다	2(11%)	2	0	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0	0
개인과 데스크별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	매우 그렇다	1(5%)	1	0	0
	그렇다	3(16%)	1	0	2
	그렇지 않다	10(53%)	6	3	1
	전혀 그렇지 않다	5(26%)	3	1	1

주) () 안은 구성비임. 정상은행 중 1개 은행이 응답하지 않았음.

세부적인 운영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 12>의 항목들을 조사한 결과, 오류 발생 시 경영진에 대한 신속한 보고, 자료 및 비밀번호의 관리와 같은 보안유지장치, 운영시스템의 개발·유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 등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방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이용하고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9개의 은행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개인과 데스크별 성과에 대한 보상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4개의 은행만이 긍정적이었고 15개 은행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5) 법적위험 관리 실태

법적위험(legal risk)이란 거래상대방과의 계약 이행관계, 계약내용과 현행 법규와의 상충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다. 최근 들어 금융파생상품 계약은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13>을 보면 전체의 40%인 8개 은행이 법적위험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금융파생상품 관련 세법 전문가가 있다고 응답한 은행은 7개 이었는데 그 중 정상은행은 2개에 불과하였다. 반면, 비정상은행의 50%인 4개 은행이 관련 세법 전문가가 있다고 응답하여 정상은행에 비해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⁷⁾ 상대방의 법적 권한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은행은 55%인 11개에 달하였으며, 5개 은행이 법적 문제로 손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13> 법적위험 관리 실태

구분		계	정상은행	경고은행	퇴출은행
거래별 책임소재의 명확함	있음	12(60%)	8	1	3
	없음	8(40%)	4	3	1
법적 문제 자문위한 고문 변호사	있음	19(95%)	11	4	4
	없음	1(5%)	1	0	0
금융파생상품 관련 세법 전문가	있음	7(35%)	2	2	3
	없음	13(65%)	10	2	1
거래 상대방의 법적 권한 검토	있음	9(45%)	5	2	2
	없음	11(55%)	7	2	2
법적 문제로 손해를 본 사례	있음	5(25%)	3	0	2
	없음	15(75%)	9	4	2

주) () 안은 구성비임.

7) 이 부분은 <표 14>에서 보듯이 비정상은행은 금융파생상품의 이용실적이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과 배치되어 신뢰성이 떨어지나, 주석 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생상품 이용실적에 대한 응답이 부정확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전체 은행 중 25% 은행이 법적 문제로 인한 손해를 경험하였음에도 거래별 책임소재 파악과 거래 상대방의 법적 권한 검토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대부분의 국내 은행들은 문제 발생 시 변호사를 이용한다는 소극적인 해결책에 안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분쟁발생을 대비한 입증자료의 보관과 유지를 확인한 결과 19개 은행이 보관·유지하고 있다는 긍정적 응답을 하였다.

4. 금융파생상품 이용 현황

1) 국내 은행의 금융파생상품 거래 비중

국내 은행의 금융파생상품 이용 현황과 이용되고 있는 금융파생상품이 위험관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내용은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 결과, 금리나 통화와 관련해서는 스왑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주식과 관련해서는 선물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옵션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금리, 통화, 주식과 관련해서 각각 스왑, 선도, 옵션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한 Bodnar, Hayt, and Marston(1996)이나 금리나 주식과 관련해서는 선물, 통화와 관련해서는 선도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한 Levich, Hayt, and Ripston(1999)과는 상이한 결과이다.⁸⁾ 그러나 11개의 은행이 선도나 선물을, 10개의 은행이 스왑을, 15개 은행이 옵션을 거래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⁹⁾

정상은행과 퇴출은행을 비교하면, 퇴출은행은 통화선도, 통화선물 및 통화스왑과 금리스왑을 이용한 은행이 1개씩 있을 뿐 그 외의 상품은 거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은행은 퇴출은행과 경고은행보다 통화, 금리 관련 상품의 이용에 적극적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주식 관련 상품의 이용은 다른 두 집단과 동일하게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2) 금융파생상품 이용 목적

본 조사는 GAO(1994)에 따라 금융파생상품을 이용하는 목적을 자본조달비용 절감,

8) GAO(1994)의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자본비용 절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선도(50%)와 이자율스왑(44%)을, 헤지를 위해서는 외환파생상품(94%)과 선물(82%)을, 수익률 증가를 위해서는 선물(81%)과 옵션(81%)을 꼽았다.

9) 한국은행(1997)에 따르면 6개의 지방은행을 제외하고는 금융파생상품의 거래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의 응답자가 위험관리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금융파생상품거래 전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

수익증가, 헤지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은행은 자본조달비용 감소나 수익증가보다는 헤지를 목적으로 금융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조달비용 감소와 수익증가를 중요한 목적으로 인식하는 은행은 각각 3개, 1개이었으며, 헤지를 중요한 목적으로 인식하는 은행은 10개이었다. 이는 기금투자자들의 파생상품 이용 목적을 헤지(55%), 자산할당(26%), 수익증대(15%) 순으로 보고하고 있는 Levich, Hayt, and Ripston(199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표 14> 금융파생상품 이용

구분		금리관련				주식관련				통화관련			
		계	정상	경고	퇴출	계	정상	경고	퇴출	계	정상	경고	퇴출
선도	매우 크다	0	0	0	0	0	0	0	0	2(10%)	2	0	0
	크다	2(10%)	1	1	0	0	0	0	0	2(10%)	2	0	0
	작다	3(15%)	2	1	0	1(5%)	1	0	0	3(15%)	1	1	1
	매우 작다	4(20%)	4	0	0	2(10%)	1	1	0	3(15%)	3	0	0
	거래 없다	11(55%)	5	2	4	17(85%)	10	3	4	10(50%)	4	3	3
선물	매우 크다	1(5%)	1	0	0	0	0	0	0	0	0	0	0
	크다	3(15%)	1	2	0	2(10%)	1	1	0	5(25%)	3	2	0
	작다	3(15%)	3	0	0	1(5%)	1	0	0	1(5%)	1	0	0
	매우 작다	2(10%)	2	0	0	2(10%)	2	0	0	4(20%)	3	0	1
	거래 없다	11(55%)	5	2	4	15(75%)	8	3	4	10(50%)	5	2	3
스왑	매우 크다	4(20%)	3	1	0	1(5%)	1	0	0	2(10%)	1	1	0
	크다	2(10%)	1	1	0	0	0	0	0	3(15%)	3	0	0
	작다	2(10%)	2	0	0	1(5%)	1	0	0	3(15%)	2	1	0
	매우 작다	2(10%)	1	0	1	2(10%)	1	1	0	4(20%)	2	1	1
	거래 없다	10(50%)	5	2	3	16(80%)	9	3	4	8(40%)	4	1	3
음션	장내	매우 크다	0	0	0	0	0	0	0	0	0	0	0
		크다	1(5%)	0	1	0	1(5%)	0	1	0	1(5%)	0	1
		작다	1(5%)	1	0	0	2(10%)	1	1	0	1(5%)	1	0
		매우 작다	2(10%)	2	0	0	3(15%)	3	0	0	4(20%)	4	0
	거래 없다	16(80%)	9	3	4	14(70%)	8	2	4	14(70%)	7	3	
	장외	매우 크다	0	0	0	0	0	0	0	0	0	0	0
		크다	0	0	0	0	0	0	0	0	1(5%)	0	1
		작다	2(10%)	1	1	0	1(5%)	1	0	0	1(5%)	1	0
		매우 작다	3(15%)	2	1	0	3(15%)	2	1	0	6(30%)	5	1
		거래없다	15(75%)	9	2	4	16(80%)	9	3	4	12(60%)	6	2

주) () 안은 구성비임.

한편, <표 15>에서 보듯이 국내 은행은 주로 시장가치와 현금흐름 변동성 관리 목적으로 헤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헤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현금흐름관리(49%)와 회계적 이익 창출(42%)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의 시장가치 증대(8%)와 대차대조표 관리(1%)는 그 중요성이 낮다고 보고한 Bodnar, Hayt, and Marston(1996)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표 15> 헤지를 통한 관리대상

구분	계	정상은행	경고은행	퇴출은행
회계적 이익 변동성	매우 크다	0	0	0
	크다	4(20%)	2	1
	작다	3(15%)	2	1
	매우 작다	2(10%)	1	1
	거래 없다	11(55%)	7	1
현금흐름 변동성	매우 크다	3(15%)	3	0
	크다	6(30%)	3	2
	작다	1(5%)	1	0
	매우 작다	0	0	0
	거래 없다	10(50%)	5	2
기업의 시장가치	매우 크다	3(15%)	3	0
	크다	6(30%)	3	2
	작다	1(5%)	1	0
	매우 작다	0	0	0
	거래 없다	10(50%)	5	2

주) () 안은 구성비임.

5. 은행 간 차이검정 결과

본 절에서는 정상은행과 비정상은행 간, 비퇴출은행과 퇴출은행 간 차이검정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계량화가 가능한 35개 척도형 문항에 대해서는 맨-휘트니 U 검정을, 계량화가 불가능한 8개 범주형 문항에 대해서는 피셔 정확 검정을 실시하였다. 아래에서 상세히 언급하는 몇 문항을 제외하고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서는 지면관계 상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에 대해서만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16>은 정상은행과 비정상은행 간 차이검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비정상은행의 경우 유동성위험 측정이 정상은행보다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유동

성위험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용위험을 줄이기 위한 상계협정의 활용정도는 비정상은행이 정상은행보다 더 높았다. 또한 비정상은행은 정상은행에 비하여 금융파생상품을 이용하여 회계적 이익 변동성을 더 헤지하고자 하였다. 금융위험관리 감독 측면에서는 비정상은행의 감독활동이 정상은행들에 비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퇴출은행과 퇴출은행 간 차이검정 결과는 <표 17>에 나타나 있다. 분석결과, 퇴출은행의 경우 최고경영자에게 금융파생상품 사용에 대한 보고가 비퇴출은행에 비해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퇴출은행 모두 금융파생상품관련 신용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비퇴출은행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퇴출은행은 비퇴출은행에 비해 유동성위험에 대한 측정이 소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6> 정상은행과 비정상은행의 차이검정 결과

구 분	감독활동	상계협정 활용	유동성위험 측정주기	회계적 이익 변동성 헤지
정상은행 순위 합		91.5	147.5	49.5
비정상은행 순위 합	-	98.5	42.5	55.5
맨-휘트니 U 값		25.5*	14.5**	4.5**
피셔 정확 검정 통계량	5.03***	-	-	-

주)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표 17> 비퇴출은행과 퇴출은행 간 차이검정 결과

구 분	금융파생상품 사용 보고주기	금융파생상품관련 신용위험관리	유동성위험 측정주기
비퇴출은행 순위 합	167.0	169.0	82.0
퇴출은행 순위 합	23.0	21.0	23.0
맨-휘트니 U 값	13.0**	11.0***	7.0***

주)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IV. 결 론

본 조사의 목적은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은행의 위험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아울러 파생상품 이용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설문은 금융위험 전반에 관한 질문과 파생상

품 사용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금융위험 전반에 관한 조사 결과, 위험관리 부서의 책임자는 부장에서 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진의 적극적인 참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고경영자와 위험관리 실무자 간의 의사소통과 금융파생상품의 사용 등 관련사항의 보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감사위원회 역시 외부전문가를 둔 은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영층의 위험관리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대부분의 은행이 위험관리에 관한 내부규정을 갖고 있으며, 관리체계의 효과에 대해서는 45%인 9개 은행이 낮다로 응답하였다. 위험노출과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주기는 매월로 응답한 은행이 13개로 가장 많았으며, 위험관리의 방침과 절차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평가는 특별한 주기가 없고 필요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보고한다가 35%로 가장 높았다. 금융위험의 평가방법으로는 12개의 은행이 스트레스 검정·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한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10개 은행이 듀레이션, 9개의 은행이 VaR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위험의 유형별 관리에 관한 조사에서는 모든 은행에 신용위험관리 전담조직이 있었으며, 신용위험관련 지침 및 절차가 있었다. 시장위험 측정모형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은행은 40%로 나타났으나, 매일 VaR값과 실제 손익을 정기적으로 비교하는 경우는 15%에 불과하여 시장위험 관리의 취약성을 보였다. 유동성위험 관리에서는 매일과 매월 측정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45%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은행에서 유동성의 원천과 사용을 파악하고, 유동성관련 비율들을 산정하여 비교하며, 유동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관리 담당자의 교육 주기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60%로 가장 높아 운영위험 관리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법적위험 관리에 관한 조사에서는 40%의 은행이 법적위험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금융파생상품의 이용에 관한 질문에서는, 금리나 통화와 관련해서는 스왑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주식과 관련해서는 선물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옵션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정상은행은 기타은행보다 통화나 금리 관련 상품의 이용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다른 두 집단과 동일하게 주식 관련 상품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파생상품의 이용 목적으로는 자본조달비용 감소와 수익증가보다는 헤지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정상은행과 비정상은행, 비퇴출은행과 퇴출은행 간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상은행과 비정상은행

간 차이검정에서 정상은행이 비정상은행보다 금융위험관리에 대한 감독이 더 활발하고 유동성위험 측정주기가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퇴출은행과 퇴출은행 간 분석에서는 퇴출은행의 경우 비퇴출은행에 비해 금융파생상품 사용 보고주기와 유동성위험 측정주기가 길고 금융파생상품관련 신용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약컨대, 국내 은행의 위험관리는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위험 유형별로는 전통적 은행업무와 관련한 신용위험이나 시장위험 및 유동성위험을 잘 인식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운영위험이나 법적위험에 대한 인식은 미비하였다. 특히 법적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국제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적절한 대비책이 없었다. 또한, 정상은행과 비정상은행, 비퇴출은행과 퇴출은행의 위험관리 행태에도 몇 항목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고은행 및 퇴출은행을 선정할 때 위험관리에 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위험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체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하겠다. 아울러 합리적 은행구조조정을 위해서는 BIS 기준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당해 은행의 위험관리 실태와 그에 따른 경영책임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본 조사는 일부 은행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할 수 없어 국내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위험관리 실태를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개별 은행의 전반적인 위험관리 실태를 담당자 개인의 설문 응답으로 평가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보다 엄밀한 연구에 의해서 본 연구가 발견한 여러 시사점을 확인하는 작업은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참 고 문 헌

- 한국은행, 「은행경영통계」, 1997.
- 함유근, 「은행의 위험관리시스템 도입 및 활용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1998.
- BIS, Basle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Risk management guidelines for derivatives," 1994.
- _____, (Joint Report by the Technical Committee of the "IOSCO"), "Survey of disclosures about trading and derivatives activities of banks and securities firms," 1998.
- Breeden, D. and S. Viswanathan, "Why do firms hedge? An asymmetric information model," *Working paper*, Duke University, 1996.
- Bodnar, G. M., G. S. Hayt, and R. C. Marston, "1995 Wharton survey of derivatives usage by U.S. non-financial firms," *Financial Management* 25, 1996, pp.113-133.
- Daniel, W., *Applied Nonparametric Statistics*, Houghton Mifflin, 1978,
- Diamond, D., "Financial intermediation and delegated monitoring," *Review of Economic Studies* 51, 1984, pp.393-414.
- Froot, K. A., D. S. Scharfstein, and J. C. Stein, "LDC debt : Forgiveness, indexation and investment incentives," *Journal of Finance* 44, 1989, pp.1335-1350.
- _____, "Risk management: Coordinating investment and financing policies," *Journal of Finance* 48, 1993, pp.1629-1658.
- GAO, "Financial derivatives-actions needed to protect the financial system," 1994.
- Levich, R. M., G. Hayt, and B. A. Ripston, "1998 Survey of derivatives and risk management practices by U.S. institutional investors," New York University, 1999.
- Loderer, C. and K. Pichler, "Firms, do you know your currency risk exposure? Survey results," *Working paper*, Universitat Bern, 2000.
- Santomero, A. M., "Commercial bank risk management : An analysis of the process,"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5.
- Saunders, A., *Financial Institutions Management*, Irwin, 1997.
- Smith, C. W. and R. Stulz, "The determinants of firms' hedging policies,"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20, 1985, pp.391-405.
- Stulz, R., "Optimal hedging policies,"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19, 1984, pp.127-140.

_____, "Managerial discretion and optimal financing polici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6, 1990, pp.1-19.

Wharton/CIBC World Markets, "1998 Survey of derivatives usage by U.S. non-financial firms," 1998.